

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정관

제정 2008.09.24.
일부개정 2009.03.06.
개정 2014.02.28.
일부개정 2020.12.09.
일부개정 2023.01.28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협회의 명칭은 "대한장애인e-스포츠연맹"(이하"본회"라 한다)라고 하고, 영문으로는 Korea e-Sports Federation for the Differently Abled(약칭 KeSA)으로 표기한다. <개정 '09.03.06.>

제2조 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등록된 주소지에 두며, 시·도에 지회 및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. <개정 '09.03.06. '20.12.09 '23.01.28>

제2장 목적 및 사업

제3조 (목적) 본회는 한국 장애인 e스포츠를 총괄 대표하며, e스포츠의 보급·발전과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운동정신을 함양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며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'09.03.06.>

제4조 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<개정 '09.03.06.>

1. 장애인 e스포츠의 보급 및 저변확대
2. 장애인 e스포츠를 통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3. 장애인 e스포츠 선수 등급분류 및 등록제도 운영
4. 장애인 e스포츠 대회의 표준 및 심사기준 제정
5. 각종 장애인 e스포츠 공인대회 주최·주관 및 승인
6. 장애인 e스포츠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·검토
7. 장애인 e스포츠 경기기술의 연구
8.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 개최
9. 장애인 e스포츠대회관련 국제교류사업
10. 우수 e스포츠 개발지원

11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 (수익사업)

-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'09.03.06.>
- ② 본회는 각 시·도지회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한 각 시·도 지회 소관 범위 안에서 장애인 e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줄 수 있다. 단, 선수권 대회는 제외한다. <개정 '09.03.06.>

제3장 조 직

제6조 (조직)

- ① 본회는 본회가 가맹을 인정한 시·도지회 및 지부로서 조직한다. <개정 '20.12.09.>
- ② 본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서 제3조 목적에 찬동하고 등록·가입한 단체로 조직한다. <개정 '09.03.06.>

제7조 (가입)

- ① 본회의 단체회원 가입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, 본회의 의무규정을 준수한 단체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. <개정 '09.03.06.>
- ② <삭제 '20.12.09.>
- ③ 본회의 회원이나 단체에 대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'09.03.06. '20.12.09>

제8조 (탈퇴)

- ① 본회에 가입한 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, 이는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써 확인되고, 이사회는 이를 차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'09.03.06.>
- ② 본회에 가맹한 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그 자격을 박탈한다.
- ③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. <개정 '09.03.06.>

제4장 권리와 의무

제9조(권리) 각 가입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. <개정 '09.03.06.>

- ① 대의원은 시·도지회장(회장 또는 회장 대행 부회장)을 청하며, 시·도지회가 없을 시 본회에서 승인된 단체장(회장 또는 회장 대행 부회장)으로 한다. <개정 '20.12.09.>
- ② 대의원총회에 소정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- ③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
- ④ 본회에 주최·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

제10조(의무) 각 가입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. <개정 '09.03.06.>

- ①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각 가입단체는 당해 단체(팀) 또는 개인선수들의 등록을 양식에 의하여 각 본회가 승인하는 대회를 개최하기 10일전에 완료하여야 한다.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, 본회 회장이 긴급히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'20.12.09.>
- ③ 위 2항의 등록시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소정의 회비나 가입단체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'20.12.09.>

제5장 임 원

제11조 (임원의 구성) <개정 '09.03.06.>

-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,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.
- ② 이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3/10 이상은 장애인 선수 출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단,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.

1. 선임임원

- 가. 회장 1인
- 나. 부회장 약간인

다. <삭제'23.01.28.>

라. 이사 30인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<'개정23.01.28.>

마. 감사 2인

2. 위촉임원

가. 명예회장 약간인

나. 대의원 시·도 지회장 1인을 비롯한 본규정 제19조 대의원

다. 고문 및 참여 약간인

라. 분과위원 약간인

마. 특별위원 약간인

단, 대의원이나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본회 회장이 임면한다. <개정 '20.12.09.>

제12조 (선임임원의 선출방법)

① 선임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.

2. 부회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. <'개정23.01.28.>

3.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정원수 3분의 1이내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으며,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.

②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, 대의원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대의원 권한행사에 의하여 구성된 당해 집행부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.

제13조 (위촉임원의 선출방법) 위촉임원은 회장이 선출하여 위촉한다. <개정 '20.12.09.>

① 명예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한다.

② 고문, 참여, 분과위원, 특별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. <개정 '20.12.09.>

제14조 (선임임원의 임무) 본회의 선임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'09.03.06.>
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
-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,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④ 전무이사는 부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·감독하며, 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
-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 - 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사항
 - 2. 이사회와 그 운영을 감사하는 사항
 - 3.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,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
 - 4.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부처 장관에 보고하는 사항
 - 5. 제 4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

제15조 (위촉임원의 임무) <개정 '09.03.06.>

- ① 명예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본회를 부분 대표할 수 있다.
- ② 고문 및 참여는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.
- ③ 분과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특수한 전문적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특별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특별사항에 관하여 심의·처리하고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.
- ⑤ 위촉위원에게 필요한 경우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'20.12.09.>

제16조 (임원의 보수)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 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'09.03.06.>

-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
- ② 미성년자
- ③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- 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- 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제18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.

- ① 선임임원의 임기 중 이사는 4년, 감사는 2년으로 하되 기산은 정기대의원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 중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. 단,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촉 될 때에는 해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.
-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,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.
- ④ 임원의 임기 중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전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선임임원의 임기는 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고, 1년 미만일 때에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. 단 불분명할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.
- ⑤ 임원은 중임할 수 있으며,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

제6장 대의원총회

제19조 (구성) 총회는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- ① 각 시·도지회장(회장 또는 부회장) 1인 <개정 '09.03.06.>
- ② <삭제 '14.02.28.>
- ③ <삭제 '14.02.28.>
- ④ <삭제 '14.02.28.>
- ⑤ <삭제 '23.01.28.>
- ⑥ 이사회에서 추천한 체육계 및 학계인사 <신설 '14.02.28.>

제20조 (기능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<개정 '09.03.06.>

-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-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- ④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- ⑤ 정관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⑥ 기타 중요사항

제21조 (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,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- ③ 총회는 매년 1월 말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 전, 긴급을 요할 때에는 1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.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임시의장에 의할 때에는 의장이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·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⑥ 총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.

제22조 (총회소집의 특례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-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제14조 제 5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각 시·도 지부의 회장 3분의 1이상이 소집 요구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'09.03.06.>
- ④ 제3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는 참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3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
-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<개정 '09.03.06.>

제24조 (의결정족수) <개정 '20.12.09.>

- ① 총회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5조 (임원의 불신임)

-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<개정 '20.12.09.>
- ② 해임 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의 찬성으로 제의되고,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다.
- ③ 해임 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

제26조 (임원의 발언권)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 위촉임원에 있어서도 총회의 요청 또는 승인이 있을 때에는 동일하다. <개정 '09.03.06.>

제27조 (의사규정)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장 이사회

제28조 (구성)

- ① 이사회는 최고집행기관으로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며, 사무국장은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.<개정'23.01.28>
- ② 이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3/10 이상은 장애인선수출신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당연직 이사의 수는 이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제29조 (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
- ④ 정관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
-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⑥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⑦ 장애인e스포츠단의 승인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
- ⑧ 각종위원회의 설치,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
- ⑨ 사무국, 소속단체의 지휘감독
- ⑩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
- ⑪ 재규정의 제정
- ⑫ 기타 중요사항

제30조 (소집)

-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, 부회장 순으로 한다.<개정23.01.28>
-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적어도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- ④ 이사회는 제 3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31조 (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임을 포함한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32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제14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

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

-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 기타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 <개정23.01.28>

제33조 (긴급처리)

-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단,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 단,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4조 (상임이사회) 회장은 이사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장 사무국

제35조 (사무국)

- ① 이사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, 각 팀의 팀장 및 이하 필요한 직원을 두되, 선수출신 1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며,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한다.
- ③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나, 특별히 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'20.12.09>
- ④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'20.12.09>

제36조 (사무국 규정) <신설 '20.12.09>

- ①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② 사무국 운영 규정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.
1. 회계규정
 2. 국가대표 선발 규정

3. 위임전결규정
4. 선수 · 동호인 · 지도자 등록 규정
5. 등급분류 규정
6.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
7. 지도자협의회 운영 규정
8. 심판위원회 운영 규정
- ③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은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
제9장 각종 위원회

제37조 (설치)

-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각종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'09.03.06.>
- ②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종류 구분은 이사회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.
- ③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간사 1인, 위원 5인 이내를 둘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,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.
- ⑤ 각 장애인e스포츠단체는 장애유형별분과위원회, 심판위원회, 등급분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기능 · 운영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제38조 (운영규정) 각종 위원회의 조직,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은 이를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0장 지회 및 지부

제39조 (지위 및 명칭) <개정 '20.12.09>

- ① 지회는 그 명칭을 ○○도(시)장애인e스포츠연맹이라 칭한다. <개정 '20.12.09>
- ② 지부에 관한 규약은 본회 정관에 준한다. <개정 '20.12.09>
- ③ <삭제 '20.12.09>
- ④ 시 · 도장애인e스포츠연맹은 각 시 · 도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서, 각

시·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. <신설 '20.12.09>

- ⑤ 시·도장애인e스포츠연맹은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, 그 사무소를 해당 시·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'20.12.09>
- ⑥ 시·도장애인e스포츠연맹은 각 시·군·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. <신설 '20.12.09>

제11장 자산 및 회계

제40조 (자산)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'09.03.06>

- ① 본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
- ② 기 금
- ③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
- ④ 회 비
- ⑤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
- ⑥ 사업수입금
- ⑦ 기부금 및 찬조금
- ⑧ 기타 수입금

제41조 (자산의 구분)

- ①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<개정 '09.03.06>
 - 1. 부동산
 - 2. 기 금
 - 3.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
- ② 본회의 자산 중 제 1 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③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.

제42조 (재산관리)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, 증여,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,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재적의 2/3 이상의 의결을 거쳐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. <개정 '09.03.06, '20.12.09>

제43조 (잉여금의 처리) 본회의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 <개정 '09.03.06>

-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
- ②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
- ③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

제44조 (사업계획, 예산, 정산의 승인) <개정 '09.03.06>

- ① 본 연맹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마다 회장이 이를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본 연맹의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고 재산목록, 사업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5조 (기금 및 적립금)

- ① 본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 <개정 '09.03.06>
- ② 제 1 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.

제46조 (임원의 보수)

- ① 상근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.
-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단,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47조 (회계 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. <개정 '09.03.06>

제48조 (회계원칙) 본 회의 회계는 수지상태의 정확성과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'09.03.06>

제49조 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2장 보 칙

제50조 (표창 및 징계)

- ① 본 연맹은 장애인 e스포츠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
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. <개정 '09.03.06>
-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51조 (정관개정)

- ① 본 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
제의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'09.03.06>
- ② 정관 및 규정의 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 날부터 유효하며,
보고된 규정에 대하여 개·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대한장애인
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
제52조 (시행세칙 등)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
의결로써 결정·시행한다.

제53조 (해산) <개정 '09.03.06>

- ① 본회는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.
 1.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
 2. 주무부처장관의 설립허가 취소
-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
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.

제54조 (준용 규정)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장애인체육회
정관 및 가맹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 ('08.09.24)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발기인총회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'09.03.06)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9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'14.02.28)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4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'20.12.09)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0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'23.01.28)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3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